

2025년 임시주주총회 안건 참고자료

제 1 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변경 前	변경 後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하이소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HYSONIC Co., Ltd.”라 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 <u>케이이엠텍 주식회사</u> ”라 한다. 영문으로는 “ <u>KEM Tech Corp.</u> ”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1.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살균제, 화학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온열팩 제조 및 도소매업 1. 2차전지 관련 부품 및 소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 <u>이차전지</u> 관련 부품 및 소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 내에 둔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u>오산시</u> 내에 둔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ysonic.com)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 <u>kem-tech.co.kr</u>)에 한다.
제11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u>100분의 70</u> 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부여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부여하는 주식총수의 <u>100분의 40</u> 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5년2월6일 개정 시행한다.

제 2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취지: 우수인력 확보 및 임직원 동기부여를 통해 인재의 장기적인 Retention 유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 종류	주식 수
박용직	대표이사	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300,000주
김항석	이사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45,000주
이경환	이사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45,000주
황용필	이사	미등기임원	기명식 보통주	40,000주
신호범	상무이사	관계회사 임원	기명식 보통주	43,000주
김기재	이사	관계회사 임원	기명식 보통주	39,000주
○○○ 외 15명	직원(관계회사 직원 포함)		기명식 보통주	298,900주
합 계	총 22명			810,9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

구분	내용
부여방법	신주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810,900주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교부할 주식의 60%는 2년 경과한 날로부터, 20%는 3년 경과한 날로부터, 20%는 4년 경과한 날로부터 행사하되 총 행사가능 기간은 7년 이내로 함
기타조건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